

# 교육급여와, 교육비 무엇이 다른가요?

## 지원기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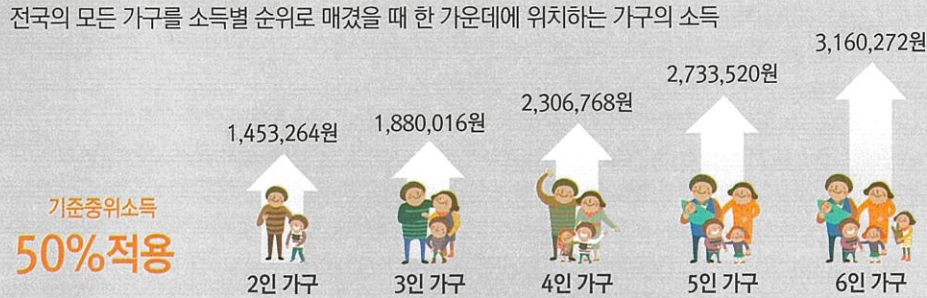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는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소득 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1)}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2)}$$

- (1)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
- (2) (각종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 \* 재산 :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 지원기준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 저소득층 자격 보유(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법정 차상위 종류

구분	내용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 기준"에 해당
- 학교장 추천 :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

## 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전체	전체	전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일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2% 이하			
학교장 추천	○	○	○			

\* 지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